■ 건축법 시행규칙 [별지 제31호서식] <개정 2011.4.1>

공작물축조신고필증

신고번호	
건축주	
대지위치	

축조할 공작물의 종류

종류	구조	높이 (m)	길이 (m)	면적 (㎡)	건폐율 (%)

귀하께서 제출하신 공작물축조신고서에 따라 공작물축조신고필증을 「건축법 시행규칙」 제41조에 따라 교부합니다.

년 월 일

특별자치도지사, 시장・군수・구청장 직인

210㎜×297㎜ [보존용지(2종) 70g/㎡]